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0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김정윤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정윤
건명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 의견</p> <p>본 청원인 김정윤은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입니다. 2016년 2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입니다.</p> <p>2차 피해란 사건이후 사법기관, 친구, 언론 등의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생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공판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공간에서의 조사 진행, 조사관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과 유책성 질문, 미온적 태도, 조사 지연과 합의 중용, 피해생존자 비난 및 의심 등,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신원노출, 허위고소·허위진술의 의심을 받거나 범죄를 유발한 책임 여부에 대한 추궁 등이 포함됩니다.</p> <p>최근 수사기관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2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가지게 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학생권익위원회 의원들은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수련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p> <p>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장 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수사기관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피해아동 측은 “소환 당시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번이나 다시 녹화해야 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진날에야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추궁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5일 정 경사는 A(18) 양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조사했다. A 양은 자신이 음란 동영상 피해자이며,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정 경사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A 양을 꼬드겨 신체 일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경사는 또 A 양과 함께 온 상담자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한 뒤 A 양을 사무실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일요일이어서 경찰서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 경사의 범행은 A 양이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탄로 났습니다.

이미 심각한 1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깁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법안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이하의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장 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조 1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2항에서의 ‘편안한 상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필요한 법원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동성인 경찰이 피해자진술을 책임지고 맡아 하며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바입니다.

- 신구문 대조표 -

현행법안	개정법안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 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은 현행과 동일 ② <u>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필요한 법원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u>

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횡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와 동성인 경찰관이 피해자진술을 맡아야 한다.

2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원인 성명 : 김정윤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